

제4장

공표기관별 외국인·다문화 통계 비교 연구

송다영

요 약

통계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에서는 각 기관의 정의 하에 다양한 외국인 및 다문화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기관별로 통계 작성 기준이 서로 다르고 포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 활용 시 오남용되는 경우도 있다. 관련 통계를 활용하기 전에 통계 용어 개념 정립과 통계별 차이의 명확한 근거에 대해 인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용어 개념을 정리하고 통계기준과 차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세부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통계이용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적인 통계(‘체류외국인통계’, ‘출입국가통계’,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인구주택총조사’, ‘국제인구이동통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외국인주민현황’,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비교하고, ‘외국인·다문화 통계 활용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및 다문화와 관련하여 공표기관별 통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세부유형별 통계의 용어 개념 및 수치 등의 비교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주요용어 : 외국인, 체류자격,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등록센서스 등

제절 서론

외국인 및 다문화 가구의 규모와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새로운 통계조사를 시작하거나 기존통계가 개선되는 등 통계작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통계이용자도 다양하게 공급되는 통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목적에 맞게 통계와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각 통계마다 작성기준과 포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를 이용하면서 개념정의에 혼란이 존재하며, 연구 논문 등에서 통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찾을 수 있다. 용어가 유사해 보이지만 서로 차이가 존재한다면 통계 차이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협의하지 않은 한 작성기준과 세부적인 방법을 공유하기 어려우며 하나의 기준으로 맞고 틀리고의 판단을 할 수도 없다. 각 기관이 공표 시 이용자를 위한 일러두기를 작성하더라도 다른 통계와의 차이점을 모른다면 통계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두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공급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한눈에 관련 통계들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다문화 통계 활용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개념정의 및 비교분석에 사용될 총 8개의 통계를 연구 자료로 이용한다. 먼저, 대표적인 외국인 통계인 법무부의 ‘체류외국인통계’가 있고,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외국인, 다문화가구 부문)’가 있다. 그리고 국제이동에 대한 통계는 법무부의 ‘출입국자통계’,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가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등 취업에 대한 통계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¹⁾) 동향조사’, 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있다. 위 통계는 외국인·다문화 관련 사업 계획, 정책입안 및 연구논문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및 다문화와 관련하여 공표기관별로 작성되는 통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세부유형별 통계의 용어 개념 및 수치 등의 비교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용어 개념 정의를 정립하여 공급자 및 이용자의 사용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하고, 활용목적에 맞는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안한다.

1)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제2절 공표기관별 통계 특성

1. 법무부

법무부는 1963년 3월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률 제1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82조(통계보고)에 근거한 대표적인 통계는 ‘출입국자통계’와 ‘체류외국인통계’이다. ‘출입국자통계’는 1975년 7월 통계작성승인(제111001호)을 받았고 ‘체류외국인통계’는 1976년 12월 통계작성승인(제111004호)을 받아 1년 주기로 공표하고 있으며 행정자료 기반으로 집계한 방식의 보고통계이다.

‘출입국자통계’는 내·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상황을 파악하여 출입국관리업무와 관련된 정책판단 및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송수단을 불문하고(통과 여객 제외) 출입국절차를 필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 출입국사무소에서 법무부로 보고하고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체류외국인통계’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체류 외국인의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외국인 체류관리 통계, 국적통계, 외국 국적동포통계, 난민통계, 결혼이민자통계, 불법체류통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통계, 남북왕래자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및 관리, 국적업무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행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방대한 행정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그 자료는 타 통계작성에도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추세분석을 하고 있다. 2004년 8월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개발을 시작하였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동 법률 제1조에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 통계는 법률 제정 이후, 2006년 7월 통계작성승인(제11827호)을 받아 반기 및 1년 주기로 공표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일반고용허가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한 외국국적 동포(특례고용허가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고체계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 고용정보원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의 원시자료를 정리하고 관리하며, 고용노동부는 시스템 상에서 관련 현황을 최종 확인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 통계는 시스템의 자료를 행정자료 기반으로 집계하여 작성하는 보고통계이다.

특이한 사항은 자료공유 포털사이트에 따라 기준과 집계표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시스템 관리하고 자료 업데이트 하는 주관기관이 다르고, e-나라지표²⁾와 KOSIS³⁾에 전송하는 집계표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4-1>은 KOSIS에 업로드 된 자료이며 1년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이다. 반면 <표 4-2>는 e-나라지표에 업로드 된 자료이며 반기별 자료이다. 7월 31일 또는 12월 31일에 국내에서 취업 중인 총 외국인 근로자 수를 일컫는다. e-나라지표에는 자료출처가 한국고용정보원이며, KOSIS에는 출처가 고용노동부임을 알 수 있다.

즉, 1년 동안(동태적 통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KOSIS에서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시점(정태적 통계)의 국내 고용되어 있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총 규모는 e-나라지표에서 볼 수 있다.

<표 4-1> 업종별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단위 : 명)

업종별	2014	2015	2016
합계	51,556	51,019	59,822
제조업	40,874	40,223	47,425
건설업	2,299	2,228	2,593
농축산업	6,047	5,949	7,018
서비스업	91	71	68
어업	2,245	2,548	2,718

자료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 KOSIS, 각 연도

2) www.index.go.kr/main.do?cate=6

3) www.kosis.go.kr

〈표 4-2〉 시도별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단위 : 명)

시도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합계	221,914	215,532
서울특별시	1,777	1,955
부산광역시	7,951	7,556
대구광역시	5,935	5,478
인천광역시	11,868	11,250
광주광역시	3,517	3,354
대전광역시	677	634
울산광역시	4,526	4,079
세종시	943	929
경기도	89,085	87,512
강원도	2,846	3,219
충청북도	11,476	11,263
충청남도	16,986	17,147
전라북도	6,693	6,474
전라남도	9,360	9,070
경상북도	15,846	15,169
경상남도	29,873	27,622
제주도	2,555	2,821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e-나라지표, 각 반기

<표 4-1>, <표 4-2>의 통계는 외국인 근로자 중 비전문취업(E-9)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규모만 해당된다.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종류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통계는 그 중 일부이다.

3. 통계청

가.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가구 관련 경성조사 표본 추출틀로 활용되는 통계청의 대표적인 통계이다.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25년 10월 간이국세조사를 시작으로 1960년에 최초로 UN통계처 지원 하에 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인구주택국세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사하였다.

이후 1962년 6월 통계작성승인(제101001호)을 받아 5년에 한번 전수항목과 표본항목을 구분하여 대규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90년간 이어오던 대규모 전수조사에 현장조사 환경 악화 및 국민 응답부담 등의 원인으로 행정자료 중심의 등록센서스⁴⁾ 방식의 도입은 불가피하였다. 8년 연구 끝에 2015년 11월, 전수항목⁵⁾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표본항목⁶⁾은 전 국민의 20% 표본조사(면접 및 인터넷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등록센서스 방식의 통계작성이 매년 가능해짐에 따라 1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작성 및 공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전수항목은 1년 주기, 표본항목은 5년 주기로 변경되었다. 매년 공표 항목의 증가와 신규통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 간에 입수된 행정자료의 피드백을 거듭하며 품질을 향상시킴에 따라 통계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 통계가 존재한다. 특히 현장에서 면접조사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또는 다문화 대상자의 통계를 행정자료 연계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다문화가구와 일반 외국인가구’ 또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행정자료의 조건과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외국인 항목에는 성, 연령, 지역(시도, 시군구), 국적 및 입국연도별로 집계하고 있고, 다문화 가구 항목에는 성, 연령, 지역(시도, 시군구), 가구원수, 가구구성, 동거 자녀 수, 거처의 종류, 현재국적(이전국적) 및 국적취득연도별로 집계하고 있다.

나. 국제인구이동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는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제인구이동통계를 생산하여 현재인구⁷⁾ 작성과 장래인구추계⁸⁾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 및 저임금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상은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체류기간 90일 초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다. 즉 단기 체류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2004년 7월 통계작성승인(제101064호)을 받아 월 주기로

4)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가용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함(“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2” (‘08년)의 E-2, The register-based approach. (p.19))

5) 성별, 연령, 국적, 입국연월, 성씨분관(15년 주기), 1년전 거주지, 국적취득연도 등 13개 항목

6) 아동보육, 통근통학, 경제·사회활동, 경력단절 등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47개 항목

7) 인구주택총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특정연도 인구를 추정한 인구(Population estimates, Current population, Current Population estimates)

8)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향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을 고려하여 코호트요인법을 이용하여 향후 50년, 100년간의 인구규모 및 성·연령별 구조를 추계한 인구

공표하고 있으며, 월간은 작성기준 월 6개월 후 자료만 공표하고, 연간은 매년 7월 보도 자료 및 보고서 형태로 공표하고 있다.

이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내·외국인의 출입국 자료를 입수한 후, 기준과 조건에 맞게 행정자료 기반으로 집계한 보고통계이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출입국자통계’와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출입국자통계’는 출입국절차를 필한 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행객을 포함한 무비자 입국자 및 단기체류자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상과 통계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이다. 2012년 5월 통계작성 승인(제920018호)을 받아 매년 5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간 조사하여 1년 주기로 공표하고 있다. 기존의 ‘외국인고용조사’라는 명칭에서 2017년부터 표본에 귀화자가 포함됨에 따라 통계명이 변경되었고, 이민자라는 용어로 외국인과 귀화자를 통칭하였다. 기존에는 국내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1만 명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2017년부터 귀화자 4천 명을 추가하여 총 1만 4천 명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귀화자는 최근 5년 이내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 조사에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국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은 90일 초과하여 상주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취업자는 법률상의 용어인 외국인 근로자 외에도 실질적인 취업상태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어 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업상태가 아니면 취업자가 아니고, 그 외 체류자격이더라도 취업상태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외국인과 귀화자를 이민자로 통합하여 경제활동,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체류사항, 취업상태 등 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조사통계라고 볼 수 있으며 연구 활용도가 높다.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 최초 작성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는 ‘외국인주민현황’(작성승인 제 11025호)은 지역별 외국 출신의 이주민에 대한 성별 및 국적 등 기본현황을 파악하여 이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은 크게 3가지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자녀’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기본 자료로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명부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명부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화 조사하여 확인 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 하지만 타 통계와의 용어개념 상이, 자체 전화조사의 통계품질 문제, 담당공무원 업무 과중 등 통계 작성 과정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외국인주민현황’과 ‘체류외국인통계’ 간 통계 차이의 근거와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 두 수치에 대한 혼란이 존재하였다. 지자체 담당자가 혼인귀화와 일반귀화 여부를 판단하고 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처리기준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결혼이민자에 미귀화자와 귀화자를 포함함으로써 타 통계와의 용어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주민자녀로 작성된 수치는 국민배우자 체류 외국인과 혼인귀화자가 포함된 가구의 만 18세이하 미성년 자녀를 조사하여 작성된 수치이지만, 여러 관련 논문에서 외국인 부부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작성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용어의 모호함이 불러일으킨 결과일 것이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통계청과 오랜 협의 끝에, 2015년 7월 공표(1.1 기준)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 작성체계를 완전히 변경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작성방식이 등록 센서스로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주민현황’ 작성방식의 변경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동협의 끝에 용어개념과 통계조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표항목과 구분은 다르지만 동일한 자료원에서 작성된 통계이므로 개념과 시점이 같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외국인주민현황’은 이용자가 같은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통계라고 볼 수 있다. 주요적인 개선점을 <표 4-3>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기준시점이 바뀌었다. 기존의 1월 1일 기준에서 11월 1일로 변경되어 작성되었다. 또한, 체류자격만으로 구분해온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정의 대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개선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혼인신고 및 이혼신고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넘어 법률 정의에 가까운 통계작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족관계 및 출생신고자료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외국인주민자녀 규모 파악이 가능해졌고, 국내출생자녀와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의 구분이 신설되었다. 특히, 출입국자료를 이용하여 기준시점 포함 3개월 이상 국내에 상주했는지를 판단한 후, 총조사 대상에서 해외출국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반영하였다. 또한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출국하지 않고 국내 상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본 통계에 포함하였다.

외국인주민자녀는 외국인이나 귀화자가 아닌 국내출생자녀만 해당된 통계였지만, 국내출생 이외에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를 추가·보완하여 집계하고 있다. 각 유형별, 성별, 지역별(시군구, 읍면동), 국적별, 연령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주요 체류자격별(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이 통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중요한 통계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범위까지 공표되고 있다. 단, 읍면동범위의 집계표는 표두에 성별 구분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성별구분이 있는 경우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범위의 집계표로 분석해야 한다. 이 통계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대상자 및 자녀까지 포괄하고 있어 이용자의 관심이 많은 통계이다.

〈표 4-3〉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개선 비교표

구 분		기 준	변 경
조사 기준	기준 시점	매년 1월 1일 00시	매년 11월 1일 00시
	조사 대상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국적취득자, 자녀 외국인등록, 주민등록시스템 상 확인되는 인구	- 조사기준시점 3개월 이상 국내 미체류자 제외
조사 절차	방법	체류외국인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전화조사 수행 후 수작업 입력 작성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자료원으로 집계된 통계 협조
	절차	(읍면동) 시스템 입력 ⇒ (시군구 및 시도) 조정·검증 ⇒ (행정안전부) 자료집계, 공표	(통계청) 추출·생성 ⇒ (행정안전부·통계청) 협의·검증 ⇒ (행정안전부·통계청) 공표
	결과 공표	행정안전부 조사기준년도 7월초	행정안전부·통계청 공동 조사기준시점 익년도 10~11월경 (인총 조사결과 8월 발표 이후)
조사 유형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장기체류자 및 국내거소신고자	단기체류로 입국 후 장기(불법)체류하는 자도 포함하여 작성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이 ‘국민의 배우자(F-2-1)’, ‘국민의 배우자(F-5-2)’, ‘결혼이민(F-6-1~3)인 자’ ‘14년도 이전에는 결혼이민자에 귀화자도 포함함(‘15년부터 제외)	한국인과 혼인한 적 있는 외국인(체류자격 국민배우자 포함)
	국적취득자	혼인, 일반귀화자로 구분	구분 없음
	자녀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자녀	한국인과 혼인한 적 있는 외국인 및 국적취득자의 자녀 (국내출생, 귀화 및 외국국적자녀도 포함하여 작성)

5.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08년 8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실태, 사회통합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동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항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동 법률 제2조 2항에서 ‘결혼이민자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항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된 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앞의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이란 용어 하에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묶어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라는 범위에 혼인사유로 귀화허가된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로 모두 통용되어야 한다. 혼인 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등’과 혼란이 있으면 안 되며,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 나아가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확한 표현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 제정 이후, 2009년 7월 통계작성승인(제117079호)을 받아 3년 주기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7~10월 기간 동안 전수조사⁹⁾를 최초 실시하였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가 주관하고 조사원이 다문화 대상을 직접 방문 면접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당시 결혼이민자 정보는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모집단 자료로 활용되었다. 첫 조사에서 귀화자는 자료의 부재로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2년 조사는 통계청 통계대행과¹⁰⁾에 의뢰하여 계획 수립·설계부터 조사까지 수행되었으며 그 조사결과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후 여성가족부로 보고 되는 체계로 바뀌었다. 통계청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모집단에서 인구단위 이중

9) 2009년 첫 실태조사는 법무부에서 당시 기준에서 추출한 결혼이민자(체류자격이 ‘국민의 배우자(F-2-1, F-5-2), 결혼이민(F-6-1~3)인 자)를 대상으로 모두 면접 조사함

10) 국가통계를 대행하는 통계청의 부서로써, 국가통계 대행제도란 국가통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고품질 통계를 적기에 개선·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 수요 증대에 따라 통계조직이 취약한 부처의 통계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대행 제도 운영

추출법¹¹⁾으로 표본 추출하여 조사대상을 설정하고 조사원을 통해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2015년에도 동일한 체계로 실시하였고, 2018년 조사도 동일하게 준비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다문화 대상자로 통합하여 산출하고 있는 부분이다. 향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구분하여 조사표를 개선하고 분석한다면 활용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자녀의 연령 범위를 만 9세~24세로 제한하여 설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자녀의 정확한 용어 정리와 범위를 설정해야 모집단을 규명하고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조사설계 단계에서 다문화자녀 모집단을 규명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해당되는 자녀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만 0세~8세는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다문화자녀’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미성년 자녀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령을 만 0세~1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부처 간 다문화자녀 연령에 대한 논의는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표 4-4〉 외국인 근로자 고용동향과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비교표

통계명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작성기관	고용노동부	통계청
작성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E-9))	국내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 중 표본으로 선정된 1만 명, 5년 이내 귀화 허가받은 자 4천 명 * 표본추출틀 : 법무부 등록외국인명부, 외국국적동포 명부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귀화 허가자 자료
작성유형	보고통계	조사통계
공표주기	반기 * E나라지표에는 반기(정태통계), KOSIS에는 1년(동태통계)	1년
공표범위	전국	전국
기준시점	7월31일/12월31일	5월15일이 포함된 1주(7일간)
작성방법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집계	면접조사
작성체계	고용지원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	조사원→지방청(사무소)→통계청 고용통계과

11) 1차 추출은 전국 행정동 중 25% 읍면동을 추출 한 후(1단계:집락계통추출), 2차 추출은 추출된 읍면동에 해당하는 다문화 대상자(결혼이민자, 귀화자) 중 유효표본 16천 명을 목표로 하여, 과거 실태조사 및 시험조사의 증별 응답률을 고려한 약 26천 명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설계함(2단계: 층화계통추출)

〈표 4-5〉 체류외국인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 비교표

통계명	체류외국인통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작성기관	법무부	통계청
작성대상	단장기 체류 외국인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 단기 체류 외국인 제외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포함) * 출입국기록상 국내 90일 미만 체류자 제외
작성유형	보고통계	가공통계
공표주기	1년 *월단위 통계월보 존재함	1년
공표범위	시군구	시군구, 읍면동
기준시점	12월 31일	11월 1일
작성방법	행정자료 기반으로 집계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 등 25종 행정자료 연계활용 작성
작성체계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통계청 등록센서스과

〈표 4-6〉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외국인주민현황통계 비교표

통계명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외국인주민현황통계
작성기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작성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 27,120가구(유효 16,000가구) * 표본추출틀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자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등록외국인, 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 * 단기 체류 외국인 제외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포함) * 출입국기록상 국내 90일 미만 체류자 제외
작성유형	조사통계	가공통계
공표주기	3년	1년
공표범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준시점	7월 1일	11월 1일
작성방법	면접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활용 작성
작성체계	조사원→지방청(사무소)→통계청 통계대행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통계청 등록센서스과→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표 4-7〉 출입국자통계와 국제인구이동통계 비교표

통계명	출입국자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작성기관	법무부	통계청
작성대상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전체 출입국자	우리나라 영토에 출입국하는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 단기 체류 외국인 제외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포함)
작성유형	보고통계	보고통계
공표주기	1년 *월단위 통계월보 존재함	월
공표범위	전국	전국
기준시점	1월1일~12월31일	1일~말일
작성방법	행정자료 기반으로 집계	행정자료 기반으로 집계
작성체계	각 출입국사무소→법무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청 인구동향과

제3절 세부유형별 개념정의 및 통계비교

1. 총 외국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2조에는 ‘재한외국인’의 용어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몇 명일까? 외국인 규모를 통계별로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외국인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4-1]과 같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은 크게 단기체류자, 장기체류자, 무사증입국자로 구분한다. ‘단기체류자’는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등 90일 이하 체류 등록한 자이고, ‘장기체류자’는 유학(D-2), 교수(E-1), 영주(F-5) 등 90일 초과 체류 등록한 자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F-4)를 의미한다. 또한 승무원을 포함한 ‘무사증입국자’는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와 같이 사증면제 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이다. 외교, 공무, 협정 목적으로 입국한 자는 재임기간 동안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체류동안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이용 시 본인 인증 곤란으로 인한 국내생활 불편 해소 목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에 해당되는 대상은 무사증입국자 및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장·단기 체류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

단기체류외국인(90일 이하)		장기체류외국인(90일 초과)		무비자
①합법체류	②불법체류 (체류만료일 지남)	③등록외국인	④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⑤무사증입국자 또는 승무원

[그림 4-1] 외국인 구성 도식화

<표 4-8>에서 ‘체류외국인통계’의 총 체류외국인은 ①+②+③+④ 이외에 무사증 입국자 중 사증면제(B-1)와 관광통과(B-2) 입국자도 단기체류에 포함시켜 산출하고 있다. 장기체류외국인만 해당되는 ③+④의 수치도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 및 ‘외국인주민현황통계’는 단기체류 중 합법체류자를 제외한 ②+③+④가 포함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단, 무사증입국자 중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입국자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본인 또는 가족을 포함시켜 산출하고 있다.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장기체류외국인인 ③+④만 포함되어 있다.

〈표 4-8〉 통계별 외국인 체류 규모 비교(2016년 기준)

(단위 : 명)

통계구분	체류외국인통계		인구주택 총조사	외국인 주민현황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15세이상)
통계별 총 외국인	장·단기체류 2,049,441	장기체류 1,530,539	1,413,758	1,413,758	1,278,000*
포괄범위	①+②+③+④+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③+④	②+③+④	②+③+④	③+④

주: * 상주 기준으로 재 집계된 규모임

자료 :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KOSIS, 2016

‘체류외국인통계’의 205만 명 규모의 체류외국인은 단기체류 및 사증면제(B-1)와 관광통과(B-2) 입국자도 포함된 수치이며,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장기체류자는 153만 명이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 및 ‘외국인주민현황’의 외국인은 141만 명이고, 체류만료일이 지났지만 출국하지 않은 단기체류자, 장기체류자, 외국인 등록한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대상에서 출입국자료를 연계하고, 11월 1일 기준에 90일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지를 판단한 후, 국내 미체류자(해외 체류 중)는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배우 우효광이 추자현과 함께 한국에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등록을 했다면 체류외국인통계에는 포함되고, 만약 1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중국 스케줄 때문에 3개월 이상 출국한 상태라면, 인구주택총조사 및 외국인주민현황에는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표 4-9〉 통계별 외국인 이동 규모 비교(2016년 기준)

(단위 : 명)

통계구분	출입국자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외국인 입국자	17,418,307	1,939,902	402,203
외국인 출국자	17,255,769	1,889,041	324,960
포괄범위	①+②+③+④+⑤ (승무원 제외)	승무원	②+③+④

자료 : 법무부 「출입국자통계」,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KOSIS, 2016

출입국 국제 이동의 통계는 ‘출입국자통계’와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비교해볼 수 있다. <표 4-9>에서 ‘출입국자통계’에는 ①+②+③+④+⑤가 모두 포함된 통계이고, ‘국제인구이동통계’에는 ②+③+④가 포함된 통계이다. ‘출입국자통계’의 외국인입국자 1,742만 명, 출국자 1,726만 명은 장단기체류자 및 무사증입국자(승무원 제외)가 모두 포함된 규모이다. 참고로 국내를 입·출국하는 승무원 규모는 입국자 194만 명, 출국자 189만 명으로 따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시 주의해야 한다. 반면, ‘국제인구이동통계’의 입국자 40만 명, 출국자 32만 명은 90일 초과 장기체류자만 포함된 규모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국제인구이동통계’의 큰 목적은 현재인구를 작성하여 장래인구추계를 위함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국제이동은 제외하는 것이다. 반면, ‘출입국자통계’로는 관광, 단기방문 등 여러 목적의 외국인 이동을 월간 및 연간으로 분석하여 서비스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표 4-10〉 국제이동 집계표 정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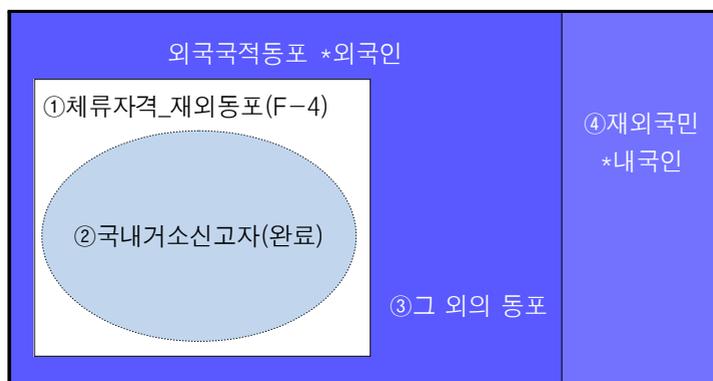
구분		출입국자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입국자	연령별	○ 5세 간격	○ 1세 간격
	국적별	○	○
	체류자격별	○	○
	항구별	○	○
출국자	출국국가별	×	○
	목적별	×	○
	국적별	○	○
	항구별	○	○
선박 및 선원	체류기간별	○	×
	항구별	○	×
	국적별	○	×
	공항별	○	×
항공기, 승무원	국적별	○	×
	항구별	○	×

<표 4-10>을 보면 ‘출입국가통계’와 ‘국제인구이동통계’에서 공표하고 있는 집계표 형식에도 차이가 있다. ‘출입국가통계’는 5세 간격, ‘국제인구이동통계’는 1세 간격으로 연령을 구분하고 있고, ‘출입국가통계’의 출국자 통계에서는 출국국가별과 목적별로 집계하지 않으며 ‘국제인구이동통계’의 출국자 통계에서는 체류기간별로 집계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인구이동통계’에서는 선박 및 선원, 항공기 및 승무원, 상륙허가의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

2.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즉, ‘재외국민’이라는 개념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즉, ‘외국국적동포’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통칭하는 상위개념이다. 주의할 점은 재외국민은 한국인이므로 주민등록인구이며,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외국국적동포에는 고려인동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개념은 「고려인동포법」 제2조에 있으며,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예인으로 예를 들면, 추성훈은 한국계 일본인, 안현수는 한국계 러시아인으로서 외국국적동포이며, 정대세는 재일 한국인, 서민정은 재미 한국인으로서 재외국민이다.



[그림 4-2] 재외동포 구성 도식화

[그림 4-2]를 보면 외국국적동포 안에 재외동포(F-4)가 있고, 그 외의 동포로 구성되어 있다. 재외동포라는 개념이 상위개념인데 하위로 속해있는 이유는 입국할 때 등록 시 부여되는 체류자격의 명칭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이다. 체류자격의 명칭일 뿐이다. 또한 F-4 체류자격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의 동일한 개념이지만 거소신고가 완료된 외국인과 신고 처리 중인 경우가 존재하여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4-2]의 ①, ②, ③, ④ 번호와 <표 4-11>의 번호를 연계하여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4-11>에서 볼 수 있듯이 ‘체류외국인통계’의 외국국적동포 규모는 총 78만 명이고 그 중 F-4 체류자격은 37만 명, 그 외 동포는 40만 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한 동포(368,862명)가 F-4 동포(372,533명)에 비해 3,671명 적은 이유는 입국 시 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거소신고 처리가 늦어진 경우이다. 참고로 ‘외국인주민현황’의 외국국적동포 통계는 국내거소신고자만 포함된 규모이며, 이 중 해외체류 중인 동포는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의 재외국민은 4만 6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4-11) 통계별 재외동포 규모 비교(2016년 기준)

(단위 : 명)

재외동포 구분	체류외국인통계	외국인주민현황	주민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775,715*	-	-
- ①체류자격 재외동포(F-4)	372,533	-	-
- ③그 외의 동포	403,182		
②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368,862	235,926	-
④재외국민	-	-	45,846

주: * 외국국적동포 총 규모(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68)

자료 :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주민등록인구통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KOSIS, 2016

행정안전부는 2015년 1월부터 주민등록인구에 재외국민을 추가하여 공표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무부에서 재외국민 규모를 공표하였으나 통계 관리부처가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을 따라야 하며, 제1조 이 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중국 출신의 피에스타 멤버 차오루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수로 예술연예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이며, 가나 출신의 연예인 샘 오취리도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으나 현재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연예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①전문 인력	단기 취업 (C-4)	교수 (E-1)	회화 지도 (E-2)	연구 (E-3)	기술 지도 (E-4)	전문 직업 (E-5)	예술 홍행 (E-6)	특정 활동 (E-7)	③그 외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
②단순 인력	②-(a)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그림 4-3] 외국인 근로자 구성 도식화

[그림 4-3]은 전문인력 및 단순인력의 체류자격 종류로 구성하였다. [그림 4-3]과 <표 4-12>를 연계하여 보면, ‘체류외국인통계’와 ‘외국인주민현황’의 외국인 근로자는 ①+②가 포함된 통계이고,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은 ②단순인력 중 비전문취업인 ②-(a)만 포함된 통계이다. 그리고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①+②+③이 모두 포함된 통계로써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자 등의 취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표 4-12> 통계별 외국인 근로자 규모 비교(2016년 기준)

(단위 : 명)

통계구분	체류 외국인통계	외국인 주민현황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15세이상 취업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통계별 외국인 근로자	597,783	541,673	835,200*	221,914
포괄 범위	①+②	①+②	①+②+③	②-(a)

주: * 상주 기준으로 재 집계된 규모임

자료 :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 KOSIS, 2016

‘체류외국인통계’와 ‘외국인주민현황’의 포괄 범위는 같으나 기준시점 3개월 이상 국내 미체류자(해외 체류 중)를 제외하기 때문에 규모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통계는 실제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외국인 취업자의 범위가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보다 더 크기 때문에 84만 명으로 가장 많고, ‘체류외국인통계’의 근로자는 60만 명, ‘외국인주민현황’의 근로자는 54만 명이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의 22만 명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현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어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EPS)에 등록된 외국인 규모이고, <표 4-13>의 ‘체류외국인통계’의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28만 명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약 6만 명의 차이는 사업장 변경 중이거나 소속된 근무지가 없는 외국인이다. <표 4-14>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비전문취업(E-9) 취업자 26만 명은 소속지 등록실태와 관계없이 현 근무처에서 조사대상주간(5.15일 포함 1주일) 1시간 이상 일한 외국인 취업자 표본조사에 의한 결과이므로 차이가 존재한다. 외국인취업자 개념은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이더라도 조사대상주간에 1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다면 제외되기 때문에, <표 4-13>의 ‘체류외국인통계’의 비전문취업(E-9)과 비교했을 때 약 2만 명 작은 규모이다. 그 차이는 조사대상주간에 1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표 4-13>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2016년 기준)

(단위 : 명)

체류자격	근로자	체류자격	근로자
계	597,783	전문직업(E-5)	618
단기취업(C-4)	594	예술홍행(E-6)	4,302
교수(E-1)	2,511	특정활동(E-7)	21,498
회화(E-2)	15,450	비전문취업(E-9)	279,187
연구(E-3)	3,174	선원취업(E-10)	15,312
기술지도(E-4)	187	방문취업(H-2)	254,950

자료 :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KOSIS, 2016

<표 4-14> 체류자격별 외국인 취업자(2016년 기준)

(단위 : 천 명)

체류자격	취업자	체류자격	취업자
계	835.2	재외동포(F-4)	149.9
비전문취업(E-9)	257.8	영주(F-5)	73.9
방문취업(H-2)	192.0	결혼이민(F-2-1, F-6)	54.6
전문인력(E-1~E-7)	39.6	기타	56.3
유학생(D-2, D-4-1, D-4-7)	11.2		

자료 :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KOSIS, 2016

4.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개념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항에 정의되어 있다.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상태이지만, 향후 대한민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귀화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추자현의 남편 우효광은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으로서 국내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거주한다면 결혼이민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연예인 샘 해밍턴은 국내에 유학생으로 체류하다가 한국인과 결혼한 재한 호주인으로서 결혼이민자이다.

①거주- 국민배우자 (F-2-1)	②영주- 국민배우자 (F-5-2)	③결혼이민(F-6)			④그 외 체류자격 혼인한 적 있는 외국인
		국민배우자 (F-6-1)	자녀양육 (F-6-2)	혼인단절 (F-6-3)	

[그림 4-4] 결혼이민자 구성 도식화

[그림 4-4]는 결혼이민자 관련 체류자격과 그 외 체류자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4]와 <표 4-15>를 연계해서 보면, ‘체류외국인통계’는 ①+②+③이 포함된 통계이고, ‘인구주택총조사’와 ‘외국인주민현황’은 ①+②+③+④가 모두 포함된 통계이다.

<표 4-15> 통계별 결혼이민자 규모 비교(2016년 기준)

통계구분	체류외국인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주민현황
통계별 결혼이민자	152,374	158,620	159,501
포괄 범위	①+②+③	①+②+③+④ (집단가구원 제외)	①+②+③+④

자료 :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KOSIS, 2016

<표 4-15>를 보면 ‘인구주택총조사’ 다문화가구의 결혼이민자는 158,620명이고, ‘외국인주민현황’의 결혼이민자는 159,501명이다. 동일한 조건과 기준시점이지만 집단가구¹²⁾(비혈연 6인 이상, 시설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외국인주민현황’에

12) 통계청은 가구유형을 일반가구, 외국인가구, 집단가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혈연 구성원이 6명 이상 함께 살고 있거나, 시설로 등록된 사회시설 또는 기숙시설에 살고 있는 시설가구를 집단가구로 통칭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81명 더 많은 규모이다. 참고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15년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실제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통합하여 17,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추정값인 304,516명으로 공표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구분하여 공표한다면 타 통계와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표 4-16〉 결혼이민자 집계표 정보 비교

통계정보	체류외국인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주민현황
성별	○	○	○
연령별	×	○ 10세 단위 (마지막 범주:60세이상)	○ 10세 단위 (마지막 범주:70세이상)
지역별	○ 시군구	○ 시군구	○ 읍면동
체류자격별	○	×	×
국적별	○ 210개 국적	○ 20개 국적	○ 36개 국적
체류기간별	×	×	○
해외체류 중인 경우	포함	제외	제외
한국인과 혼인한 일반체류 외국인 (체류자격 국민배우자×) 포함 여부	미포함	포함	포함

〈표 4-16〉은 결혼이민자 통계의 집계표 정보를 각 통계별로 비교 정리한 표이다. ‘외국인주민현황’은 읍면동단위까지 공표하고 체류기간별로 집계되어있으며, ‘체류외국인통계’만 세부 체류자격별로 확인 가능하다. 국적을 나누는 기준은 3개의 통계 모두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상세한 것은 ‘체류외국인통계’이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외국인주민현황’에서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인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5. 귀화자

귀화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청한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귀화는 「국적법」 하에 시행되며 동 법률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으로 구분한다.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요건으로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아래 참고로 「국적법」 제5조~제7조에서 각 요건에 대해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 국적법 제5조~제7조

-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 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 귀화자 중 유명인으로 예를 들면, 로버트 할리(하일)는 미국 출생이며 1978년 처음 한국에 들어와 1997년에 귀화하면서 한국식 이름 하일로 개명한 귀화자이다. 이다도시(서혜나)는 프랑스 출생이며 유학생으로 1992년에 한국어학당 학생으로 한국에 온 후 1996년에 귀화하였다.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박노자)는 러시아 출생이며 1991년에 유학 온 후 2001년에 귀화하였으나 한국과 노르웨이에서 한국학 교수로 활동하다가 최근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하였다.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베른하르트 크반트(이참)은 독일출생으로 1986년 귀화한 방송인이자 기업가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했었다.

<표 4-17> 통계별 귀화자 규모 비교(2016년 기준)

(단위: 명)

통계구분	체류외국인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주민현황
통계별 귀화자	213,197*	158,498	159,447
포괄 범위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귀화허가 (집단가구원 제외)	귀화허가

주: * 귀화허가 외에 국적회복허가까지 모두 포함된 총 규모(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58)
 자료: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KOSIS, 2016

<표 4-17>을 보면 ‘인구주택총조사’ 다문화가구의 귀화자는 158,498명이고, ‘외국인주민현황’의 귀화자는 159,447명이다. 결혼이민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집단가구(비혈연 6인 이상, 시설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귀화자 949명이 ‘외국인주민현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류외국인통계’의 213,197명은 집계표에 나와 있는 수치는 아니며, 통계연보의 국적분야에서 설명글에 나와 있는 수치이다. 1948년 국적법 제정된 이후 2016년 말까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¹³⁾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규모를 의미한다. 즉, 귀화허가 외에 국적회복허가까지 모두 포함된 규모이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외국인주민현황’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인 경우만 귀화자로 판단하고,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은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계 미국인 가수 겸 배우인 유승준이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면, 이 경우 출생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귀화자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표 4-18>를 보면, ‘체류외국인통계’는 취득유형별 당해연도 취득자를 중점으로 연도별 국적업무 건수 또는 당해연도 국적취득자(귀화, 회복), 상실자, 이탈자 등 현황

13)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의 국적회복신청이 「국적법」 제9조 2항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보고를 목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 통계를 통해 현재까지의 귀화자를 구하려면 연도별 자료를 단순 누적하여 합계로 구해야 하지만 한 개인이 국적취득 후 이탈·상실 또는 재취득 등의 중간과정이 반영되지 못한 수치이다.

반면, ‘인구주택총조사’와 ‘외국인주민현황’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준시점에 주민등록인구로 속해 있는 귀화자 총 규모 및 기본 특성(성, 연령, 지역 등)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지역별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4-18〉 귀화자 집계표 정보 비교

통계정보	체류외국인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주민현황
성별	×	○	○
연령별	○ 10세 단위 (마지막 범주:91세 이상)	○ 10세 단위 (마지막 범주:60세 이상)	○ 10세 단위 (마지막 범주:70세 이상)
지역별	×	○ 시군구	○ 읍면동
취득유형별	○	×	×
이전국적별	○ 136개 국적	○ 20개 국적	○ 36개 국적
취득연도 또는 경과기간별	○ 1997년 이후 1년 단위	○ 2000년 이전, 이후 1년 단위	○ 1년 미만, 1~2년10년 이상
해외체류중인 경우	포함	제외	제외
국적회복인 경우	포함	미포함	미포함
규모 범위	당해연도 취득자	한국국적 보유하고 거주 중인 귀화자	한국국적 보유하고 거주 중인 귀화자

6. 다문화자녀와 중도입국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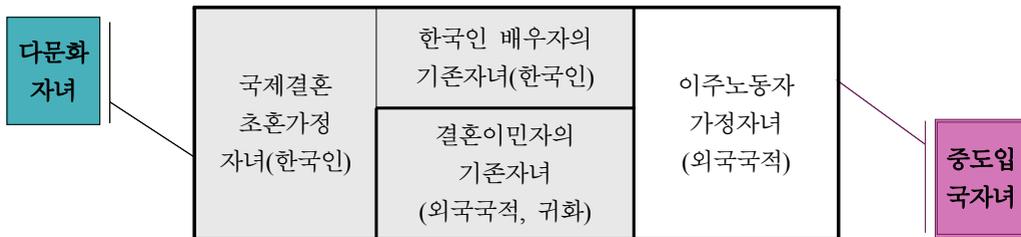
‘다문화자녀’와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재 통계로 파악할 수 있는지, 통계사각지대 수치라면 산출이 가능한지 등 통계작성방법에 대해 현재까지도 미흡한 부분을 검토 중이다. 우선적으로 통계적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다문화자녀’의 기본조건은 국제결혼이다. 국제결혼이 초혼인 경우는 국내 출생 자녀만 존재하고, 재혼인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의 기존 자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포함된다.

‘중도입국자녀’의 사전적 정의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와 이주노동자¹⁴⁾가정 자녀이다. <표 4-19>를 보면 범위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다문화자녀와 중도입국자녀의 범위에서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의 차이는 국내에서 출생한 내국인(출생) 자녀의 포함여부이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만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 출생 자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4-19>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의 범위

구분	범위1	범위2
다문화자녀	국제결혼 초혼가정 자녀(내국인(출생))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외국인, 내국인(출생, 귀화)) *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의 기존 자녀가 있을 수 있음
중도입국자녀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외국인, 내국인(귀화))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외국인)



[그림 4-5]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구성 도식화

<표 4-19>의 개념 범위를 활용하여 도식화한 [그림 4-5]를 보면 다문화자녀와 중도입국자녀 간의 교집합이 존재한다. 재혼가정 중 결혼이민자의 기존자녀로 국내에 입국하여 아직 외국국적이거나 수반취득 등으로 귀화한 경우는 다문화자녀 중 중도입국자녀로 해석하면 된다. 하지만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가정은 다문화가정이 아니므로 이주노동자가정자녀는 다문화자녀가 아니며 중도입국자녀에만 해당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자녀와 중도입국자녀의 개념 차이를 이해하고 통계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14)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개념의 용어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

‘외국인주민현황’의 외국인주민자녀에는 이주노동자가정자녀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문화자녀 범위만 포함하고 있는 통계이다. 즉 결혼이민자-한국인 배우자의 자녀와 귀화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다문화가족 자녀도 다문화자녀 범위만 조사되고 있다. 사실 통계상 이주노동자가정자녀 규모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주노동자가정자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명확하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부모-자녀관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작성기준이 모호하다.

〈표 4-20〉 성별 외국인주민자녀(2016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자녀	201,333	102,961	98,372	9,874	4,683	5,191	191,459	98,278	93,181
연령	만 0~18세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KOSIS, 2016

〈표 4-21〉 성장구분별 다문화가족자녀(2015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체	국내에서만 성장	외국 거주 및 성장		
			소계	외국에서 주로 성장	외국 거주 경험
자녀	82,476	50,165	32,311	12,782	19,529
연령	만 9~24세				

자료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KOSIS, 2015

<표 4-20>을 보면 ‘외국인주민현황’의 외국인주민자녀는 총 201,333명이고, 국내출생 자녀는 191,459명,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9,874명이다. 자녀연령은 만 1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국적 자녀는 체류자격이 국민자녀(F-2-2, F-5-3), 미 입양된 중도입국 미성년자(F-1-52)로 입국한 외국인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재혼가정인 결혼이민자의 기존 자녀로 볼 수 있다.

<표 4-21>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자녀 통계이다. 다문화가족자녀는 총 82,476명으로 추정되고, 국내에서만 성장이 50,165명, 외국거주 및 성장이 32,311명이다. ‘외국인주민자녀’와 다르게 이 규모는 만9세~24세의 연령대로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조사는 6,079명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위 통계는 표본조사의 추정값이다. 이 통계에서 외국거주 및 성장 부분을 중도입국자녀로 오인하면 안 된다. 첫째, 재혼가정인지 질문하지 않았고 둘째, 출생이 외국인지, 국내 입국한 사유가 부모의 혼인 또는 취업 때문인지 질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 자녀가 조사대상 가구에서 빠져있으므로

중도입국자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위의 세 가지가 모두 해결되어야 중도입국자녀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주민현황’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자녀 연령대가 상이하므로 연령대 범위를 주의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22〉 학교별 다문화학생(2016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교육부 다문화 학생	99,186	73,972	15,080	9,816	318

주: 다문화학생 = 국내출생자녀 + 중도입국자녀 + 외국인가정자녀

자료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 2016

〈표 4-22〉는 참고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이다. 이 통계의 하단에 다문화학생을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자녀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가정자녀’와 ‘이주노동자가정자녀’와는 또 차이가 있다. ‘이주노동자가정자녀’는 외국에서 출생했지만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자녀인 반면, ‘외국인가정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부부 사이의 자녀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적은 외국국적이다.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은 다문화자녀와 중도입국자녀의 합집합에 외국인 부부의 국내출생자녀(외국국적)까지 포함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모두 통합하여 ‘다문화학생’으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표 4-23〉 다문화자녀 집계표 정보 비교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주민현황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성별	×	○	○
연령별	×	○ 0세~18세 1세 단위	○ 9세~18세 이상 3세 단위
지역별	×	○ 시군구	×
부모국적별	×	○ 36개 국적	○ 11개 국적(비율)
출생구분/ 외국거주경험	×	○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자녀	○ 국내에서만 성장, 외국 주로 성장, 외국거주경험
학교 재학상태	×	×	○

<표 4-23>을 보면 ‘인구주택총조사’ 다문화가구부문에는 자녀통계가 없으며, ‘외국인 주민현황’에서는 성, 연령, 지역, 부모국적 등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 집계되어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연령이 만 9세 이상부터 24세까지 3세 단위이며 학교재학 상태, 외국거주경험 등 설문조사응답으로 알 수 있는 정보로 집계되어 있다.

7.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라 할 수 있다. 단, 집단가구(비혈연 6인 이상, 시설 가구)는 제외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결혼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인+외국인’, ‘한국인+귀화자’, ‘귀화자+외국인’, ‘귀화자+귀화자’로 구분된다. 국제 결혼은 4가지이지만, 이혼 또는 재혼 등의 사유로 가구구성 형태는 다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구성을 6개로 나누고 있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10개로 나누고 있다. <표 4-24>를 보면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국제결혼 종류를 기반으로 나누고 있으며, ‘내국인(귀화)’ 가구에는 1인 가구 또는 귀화자+귀화자 부부가가 포함된 가구이고, ‘내국인(출생)+다문화자녀’ 가구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가구 내에 없으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이다.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가구 내에 없는 이유는 기준시점에 해외 출국했거나 이혼 등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24> 가구구성별 다문화가구(2016년 기준)

가구구성	인구주택총조사 다문화가구
계	316,067
내국인(귀화)	47,004
내국인(출생)+내국인(귀화)	77,702
내국인(출생)+외국인(결혼이민자)	115,786
내국인(출생)+다문화자녀	33,059
내국인(귀화)+외국인(결혼이민자)	14,387
기타	28,12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KOSIS, 2016

<표 4-25>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가구구성별 집계표이며, ‘본인’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를 의미하고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이다. 동거여부, 자녀유무, 부모형제 유무로 경우의 수를 만들었으며 더 세부적인 구분과 활용이 가능하나, 국제결혼 종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표 4-25〉 가구구성별 다문화가구(2015년 기준)

(단위 : 가구)

가구구성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다문화가구
합계	278,036
본인, 자녀	11,176
배우자, 자녀	2,279
본인	18,415
부부, 자녀, 배우자 부모형제	26,646
부부, 자녀, 본인 부모형제	8,420
부부, 자녀	127,818
부부, 배우자 부모형제	6,403
부부, 본인 부모형제	1,160
부부	60,497
기타	15,220

자료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KOSIS, 2015

<표 4-26>과 <표 4-27>은 다문화가구원에 대한 통계표이다. 총 합계는 963,174명으로 동일하나, 구분항목만 다르기 때문에 분석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표 4-26>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내국인, 외국인으로 크게 구분한 뒤 내국인은 출생과 귀화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다문화 가구구성별 표의 6가지 구분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표 4-27>의 ‘외국인주민현황’은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으로 구분한 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표 4-26〉 인구주택총조사 다문화가구원(2016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인구주택총조사 다문화가구원
합계	963,174
내국인(출생)	595,050
내국인(귀화)	158,498
외국인(결혼이민자)	158,620
외국인(기타)	51,00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KOSIS, 2016

두 통계표의 결혼이민자 규모는 같으나 귀화자 규모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귀화자 중 만 18세 이하 귀화자가 자녀 쪽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표 4-20>에

나와 있는 외국인주민자녀수와 다문화가구원의 자녀수의 차이는 집단가구(비혈연 6인 이상, 시설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외국인주민자녀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타동거인의 내국인과 외국인은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을 의미한다.

〈표 4-27〉 외국인주민현황 다문화가구원(2016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외국인주민현황 다문화가구원
합계		963,174
한국인 배우자		298,858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소계	309,622
	결혼이민자	158,620
	귀화자	151,002
자녀	소계	199,161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9,750
	국내출생	189,411
기타동거인	소계	155,533
	내국인	106,781
	외국인	48,752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KOSIS, 2016

<표 4-28>을 보면 다문화가구 집계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비교할 수 있고, 다문화가구원 집계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외국인주민현황’을 비교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시군구까지 공표하고 있고, 거처종류를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건물내주택¹⁵⁾, 주택이외거처¹⁶⁾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가구원수별을 1인에서 6인 이상까지, 동거자녀수는 0명에서 4명이상까지로 나누어 집계하고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시도까지 비율로 공표하고 있고, 거처종류를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로 구분하며, 월평균가구소득별, 주택점유형태별 집계표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구원 정보는 ‘외국인주민현황’에서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은 읍면동까지 공표하고 있고, 내국인(출생)을 한국인 배우자, 국내출생자녀, 기타내국인으로 구분하는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구분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눈 형태이다.

15) 주거용 면적보다 영업용 면적이 큰 주택

16)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표 4-28〉 다문화가구·가구원 집계표 정보 비교

구분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주민현황	전국다문화 가족실태조사
다문화 가구	지역별	○ 시군구	×	○ 시도(비율로만)
	가구원수별	○ 1인~6인 이상	×	○ 1인~5인 이상
	거처의 종류별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건물내주 택, 주택이외거처	×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동거자녀수별	○ 0명,1명..~4명 이상	×	○ 0명,1명..~3명 이상
	가구구성별	○	×	○
	월평균가구소득별	×	×	○
	주택점유형태별	×	×	○
다문화 가구원	지역별	○ 시군구	○ 읍면동	×
	가구원 구분별	○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로 구분	○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귀화 및 외국인자녀, 국내출생자녀, 기타내국인, 기타외국인으로 구분	×

제4절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다문화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공표기관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세부 유형별 용어개념 정의제시와 함께 통계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서술하였다. 비교대상이 된 통계는 법무부의 '출입국자통계', '체류외국인통계',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국제인구이동통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이며, 이용자가 통계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활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외국인은 단기체류자, 장기체류자 및 무비자입국자로 구분하고, 단기체류자는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장기체류자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로 구분하였다. 체류외국인이라는 개념에는 단기체류자와 장기체류자를 모두 포함하며 이 외에도 사증면제 및 관광통과 외국인을 포함한다. 하지만 '외국인주민현황', '인구주택총조사', '국제인구이동통계'에서 외국인 개념은 상주외국인이기 때문에 장기체류자만 해당되고, 이에 단기체류자 중 90일 초과하여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다. 두 개념의 차이는 단기 합법체류자와 사증면제 및 관광통과 외국인의 포함여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외국인에는 현장조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를 제외하고 있다.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그 외 동포로 구분하고, 재외동포(F-4)로 입국하더라도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과 그 외로 구분한다.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에 속하고 재외국민은 한국인에 속한다. '외국인주민현황'의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만 해당된 통계이고, '체류외국인통계'에서 외국국적동포 총 규모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각각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거의 동일한 규모이나, 처리 중인 경우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로서, 단기취업(C-4), 교수(E-1)~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말한다. '체류외국인통계'와 '외국인주민현황'은 체류자격의 범위를 조건으로 대상을 추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은 비전문취업(E-9)의 외국인만 해당되며, 그 중에서도 현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EPS)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의 통계이다. 그래서 '체류외국인통계'의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규모와 차이가 발생하며, 그 차이는 사업장 변경 중이거나 소속된 근무지가 없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민자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 취업자라는 범위 하에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의 취업실태 조사를 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다문화 통계에서는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다문화가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통계를 비교하였다. 먼저,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이다.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자격이 국민의 배우자(F-2-1, F-5-2), 결혼이민(F-6)인 자로 추출할 수 있다. 만약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의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다면 이들도 결혼이민자이고 다문화 대상자이기 때문에 모두 포함하여야 정확한 결혼이민자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외국인주민현황’의 결혼이민자는 이를 모두 포함한 통계이다. 혼인 신고 및 이혼신고서를 통해 한국인과 혼인한 적 있는 외국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체류외국인통계’는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즉, 국민의 배우자(F-2-1, F-5-2), 결혼이민(F-6)인 자만 해당된 통계이다.

귀화자는 귀화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희망에 기초한 신청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큰 범위의 개념으로 국적취득은 귀화와 회복으로 구분한다. 다문화 대상자의 귀화자 개념에는 국적 회복자는 해당되지 않고 귀화 허가된 자만 해당된다. ‘체류외국인통계’에서는 연도별 국적취득 건수 또는 당해연도 국적취득자(귀화, 회복), 상실자, 이탈자 등 여러 유형의 국적처리 현황보고를 목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반면, ‘인구주택총조사’와 ‘외국인주민현황’에서는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귀화자에 대한 성·연령·지역 등 기본특성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자녀와 중도입국자녀의 개념정의는 특히 중요하다. 다문화자녀는 국제결혼이 전제된 가정의 자녀이며, 초혼일 경우 국내출생자녀, 재혼일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기존자녀(국내출생) 또는 결혼이민자의 기존자녀(외국국적, 귀화)가 포함한다. 중도입국자녀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와 이주노동자가정자녀이다. 재혼일 경우 결혼이민자의 기존자녀(외국국적, 귀화)와 이주노동자가정자녀(외국국적)가 포함된다. 두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주민현황’의 외국인주민자녀는 용어에서 혼란을 줄 수 있지만 다문화자녀의 개념과 같으며, 이주노동자가정자녀는 빠진 통계이다. 이주노동자가정자녀 통계는 현재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는 아직 없다. 통계청 내부적으로 산출 가능성을 검토 중이므로 향후 이주노동자가정자녀 또는 외국인부부자녀 등의 통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문화가구는 귀화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라 정의하고 있으며, 집단가구(비혈연 6인 이상, 시설 가구)는 제외한다. 매년 다문화가구에 대해 공표하는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로 유일하며, 3년에

한번 실시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해 추정값을 공표하고 있다. 가구구성을 나누는 기준은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국제결혼의 종류에 따라 나누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동거여부, 자녀유무, 부모형제유무로 경우의 수를 만들었다. 그 외 지역별, 가구원수별, 거처종류별, 동거자녀수별 등의 집계표로 다문화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문화가구원에 대한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공표하고 있다. 동일한 기준 및 시점이므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가능하며, ‘외국인주민현황’에서 내국인(출생)을 한국인 배우자, 국내출생자녀, 기타내국인으로 구분하는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구분항목을 더 세부적으로 나눈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가 외국인 및 다문화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확한 통계로 근거를 제시하려면 여러 통계에 대한 지식과 차이점을 명확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 쓰는 통계와 그 통계의 설명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독자의 혼란은 증폭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이용자, 논문 독자 등의 대상을 위해 대표적인 8개의 통계를 사례로 각 세부유형별로 개념을 정립하고 차이점을 위주로 비교 서술하였으므로 통계 사용과 설명에 주의하길 바란다. 또한, 통계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용어나 애매한 기준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면접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통계(조사통계)에서 특히 조사표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조사 질문과 응답에 따라 자료처리 결과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표 설계 시 용어 개념과 해당범위를 타 통계와의 일관성을 따져서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이용자도 이용목적에 맞게 통계를 활용해야하지만, 공급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며 작성기관 간 해결해야 할 개념과 모호한 작성기준 차이를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다문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육부(2016), “교육통계연보”.

교육부(2016),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집.

김유경(2013),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무부(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개선방안”.